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자료는 鄭仁敎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문의처: 鄭仁敎 FTA 연구팀장

전화 02-3460-1208, 팩스 02-3460-1044

이메일 ikcheong@kiep.go.kr

- 한·칠레 FTA의 전체 협정문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간에 부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2년 10월 25일 타결되었습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일 뿐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도 한·칠레 FTA 타결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FTA 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한·칠레 FTA는 공식협상에만 3년, 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4여년이 걸렸습니다. 결렬과 재개의 사이를 오가면서 많은 고비도 겪었으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다른 주요교역상대국과 FTA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귀중한 경험을 많이 축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각 부문간의 상충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은 한·칠레 FTA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을 비롯하여 격변하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칠레 FTA의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다음 주요교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의 비준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되면 한·칠레 FTA는 정부 협상담당자들의 손에서 무역인, 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이 분야 연구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칠레 FTA가 제공해주는 기회를 충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협정의 본질적인 부분인 시장접근양허안과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책자로 내게 된 것입니다.

문안을 최종 검증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중인 관계로 부득이 핵심사항 요약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

通商交渉本部長

黃斗淵

차례

I . 협상경과와 타결의 의의	7
1. 협상경과	9
2. 타결의 의의	10
3.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12
II . 협정의 구조	15
III . 시장접근 양허안	19
1. 개요 및 평가	21
2. 산업별 양허안 분석	24
IV .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내용	31
전문(Preamble)	32
제1장 최초조항	32
제2장 일반적 정의	32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32
제4장 원산지 규정	34
제5장 통관 절차	37
제6장 긴급수입제한조치	39
제7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39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9
제9장 표준관련 조치	41
제10장 투자	42
제11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43
제12장 전기통신	44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45
제14장 경쟁	45
제15장 정부조달	45
제16장 지적재산권	46
제17장 투명성	47
제18장 협정의 운영	47
제19장 분쟁해결	48
제20장 예외	49
제21장 최종 조항	49

V. 왜 칠레인가?	51
1. 칠레시장의 중요성	53
2. 한·칠레 교역구조	54
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56



협상공과와 타결의 의의



I. 협상경과와 타결의 의미

1. 협상경과
2. 타결의 의미
3.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1

협상경과

-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
- 1999년 4월 및 6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 2회 개최(서울, 산티아고)
-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 합의
- 1999년 12월 제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2000년 2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0년 5월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2000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 2000년 12월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2001년 6월 및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
- 2002년 2월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 2002년 8월 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2002년 9월 및 10월 상품양허안 별도협의 2회 개최(제네바)
- 2002년 10월 제6차 협상 개최, 협상 타결(제네바)
- 2003년 2월 15일 정식서명(서울)

2

타결의 의미

가. 우리나라의 첫 FTA

-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임.

나.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Pacific) 국가간의 첫 FTA

-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음.
-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

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방식(FTA)을 채택함.

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 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음.
- 칠레로서는 아시아국가와의 FTA를 최초로 성사시킴으로써 이 지역으로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또한 칠레를 넘어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음.

마.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 우리의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크게 제고함.

3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가.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번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되었음.
- 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칠레는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20억~30억 달러 수준임.

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 한편, 농산물 피해와 관련해 칠레측이 초기 협상과정에서는 모든 농산물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쌀, 사과,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반영했음.
- 또한 우리측의 농산물 고관세 및 이중관세 구조로 인해 관세 철폐가 어려운 입장임을 고려하여 고율관세 민감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를 포함한 37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 동시에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타를 허용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음.
- 한편, 농산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발동이 용이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도 강구하였음.

II

협정의 구조



제 1 부 일반조항

제1장 : 최초조항

제2장 : 일반적 정의

제 2 부 상품무역

제3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우리측 양허안/칠레측 양허안)

제4장 : 원산지 규정
- 부속서

제5장 : 통관 절차

제6장 :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장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제8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

제 3 부 투자 및 서비스

제10장 : 투자
- 부속서

제11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제12장 : 전기통신
- 부속서

제13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 부속서

제 4 부 경쟁,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제14장 : 경쟁

제15장 : 정부조달

- 부속서

제16장 : 지적재산권

- 부속서

제 5 부 행정 및 제도관련 규정

제17장 : 투명성

제18장 : 협정의 운영

- 부속서

제19장 : 분쟁해결

- 부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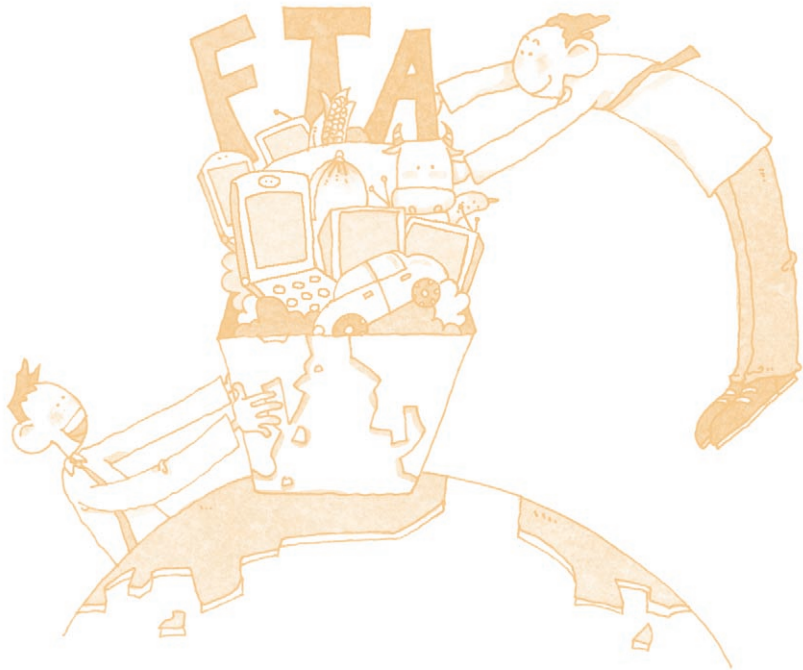
제 6 부 기타 규정

제20장 : 예외

제21장 : 최종 조항

III

시장접근 양허안



Ⅲ. 시장접근 양허안

1. 개요 및 평가
2. 산업별 양허안 분석

1

개요 및 평가

-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음.
 - 한국과 칠레는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자유화비율이 유사하며 양국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음.

가. 우리측 양허안

-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카테고리는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칠레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관세양허 카테고리는 총 10개로, 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9년철폐, 계절관세(국내 비생산 기간에 한해 10년철폐), 10년철폐, 16년철폐, TRQ+DDA 이후 논의, DDA 이후 논의, 자유화 제외 등임.
-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총 11,170개 품목 중 87.2%인 9,74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이행과 동시에 철폐함.
 - 즉시철폐 품목의 대부분인 9,101개 품목은 공산품이며, 나머지는 농산물 224개, 임산물 138개, 수산물 277개 품목 등임.
 - 한편, 10년 이내 자유화율은 96.2%로 공산품, 임산물 및 수산물의 전 품목과 농산물의 70.3%인 1,007개 품목이 해당됨.

〈표 1〉 우리나라 양허안 개요

(우리나라 HS 10단위 기준, %)

양허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 품목(농산물)
즉시철폐	9,740(87.2)	9,101(99.9)	224(15.6)	138(58.2)	277(69.5)	배합사료, 증우, 양모, 커피
5년철폐	701(6.3)	-	545(38.1)	70(29.5)	86(21.5)	고사리, 장미, 두부, 포도주, 아몬드
7년철폐	41(0.4)	1(0.01)	40(2.8)	-	-	과실주스, 과실조제품, 가금류고기, 수프, 감자
9년철폐	1(0.01)	-	1(0.07)	-	-	기타과일주스
10년철폐	262(2.3)	-	197(13.8)	29(12.3)	36(9.0)	토마토, 돼지고기, 오이, 키위
계절관세 ¹⁾	1(0.01)	-	1(0.07)	-	-	포도
16년철폐 ²⁾	12(0.1)	-	12(0.8)	-	-	조제분유, 혼합주스
TRQ+DDA 이후 논의 ³⁾	18(0.15)	-	18(1.26)	-	-	쇠고기, 닭고기, 맨드린
DDA 이후 논의	373(3.3)	-	373(26.0)	-	-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
제외	21(0.2)	-	21(1.5)	-	-	쌀, 사과, 배
합 계	11,170	9,102	1,432	237	399	

주: 품목 분류, HS code 변경 등으로 품목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10년 균등)
- 2) 5년 후 협상 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 철폐
- 3)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 후 논의

나. 칠레측 양허안

- 칠레측의 양허 카테고리는 즉시철폐, 5년철폐, 7년철폐, 10년철폐, 13년철폐, 자유화 제외 등 6개로 구성되어 있음.
- 칠레의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로, 총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됨.
 -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하기로 함.
- 칠레는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5%)을 10년내에 자유화함.

〈표 2〉 칠레 양허안 개요

(칠레 HS 8단위 기준, %)

양허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품목
즉시철폐	2,450(41.8)	1,478(30.6)	677(92.9)	96(100)	199(99)	TV,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5년철폐	1,994(34.1)	1,992(41.3)	-	-	2(1.0)	폴리에틸렌, 수송용 차량
7년철폐	14(0.2)	14(0.3)	-	-	-	유류여과기
10년철폐	1,190(20.3)	1,180(24.4)	10(1.4)	-	-	축전지, 청소기
5년거치 8년철폐 ¹⁾	152(2.6)	152(3.1)	-	-	-	철강, 섬유 및 의류
예외	54(1.0)	12(0.2)	42(5.8)	-	-	세탁기, 냉장고
합 계	5,854	4,828	729	96	201	

주: 1) 협정 발효 6년부터 13년까지 균등 철폐됨.

2) 품목 분류, HS code 변경 등으로 품목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산업별 양허안 분석

가. 공산품

- 협상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공산품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 원칙을 칠레측에 제시한 바 있으며, 전기동(7년 철폐)을 제외한 전 품목을 FTA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타결됨.
- 반면, 칠레측은 6개 양허 카테고리 모두에 제조업 품목을 배정하고 있으며, 즉시 자유화 대상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비중은 약 67%(2001년 기준)임.
- 발효 즉시 철폐 적용 품목으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류, 전자전기(휴대폰), 플라스틱(PVC, 필름 등), 섬유·의류 일부 품목,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이 해당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균등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균등 철폐됨.
 -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은 10년철폐 적용대상 품목이며,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협정 발효 후 6년째부터 13년째까지 균등 철폐됨.
 - 2001년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의 5~6%를 차지하였던 세탁기와 냉장고는 자유화의 예외로 설정되었음.

〈표 3〉 칠레 양허 카테고리별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 수출액

(단위: 천 달러)

구분	품목	2000	2001
즉시 철폐	자동차	212,109	187,984
	기계류	23,572	21,983
	전자전기	69,422	78,445
	(휴대폰)	(25,276)	(47,638)
	광물성 연료(경유)	11,826	32,906
	플라스틱(PVC, 필름 등)	8,252	7,872
	섬유·의류	11,558	8,771
	철강제품	2,983	6,608
	잡제품	5,300	4,800
	소계	345,303	350,940
5년 철폐	플라스틱제품 (폴리에틸렌 등)	39,698	42,033
	섬유·의류	8,033	7,251
	철강제품	9,202	11,662
	전기전자	5,290	5,754
	자동차부품	3,584	3,365
	소계	78,373	85,870
7년 철폐	원심분리기 등	3,013	4,456
10년 철폐	타이어(산업용)	5,342	3,871
	자동차배터리	7,088	5,858
	진공청소기	2,516	1,857
	섬유·의류	6,000	4,900
	철강제품	3,000	2,700
	소계	26,593	22,021
5년 거치 8년 철폐	타이어(승용차)	4,811	3,104
	타이어(버스)	4,274	3,790
	섬유·의류	5,200	2,800
	철강제품	7,774	8,800
	소계	24,343	20,755
예외	세탁기	28,451	27,854
	냉장고	9,988	8,230
	소계	38,642	36,289
총계		16,627	23,331

자료: 산업자원부

주: 1) 수출규모 10만달러 이하 품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HS 8단위 기준, 수출규모 상위 350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함.

나. 농산물¹⁾

- 칠레는 쇠고기 및 쌀 관련 일부 품목(10개)만을 10년 철폐로 하고, 이외의 전 품목을 즉시 철폐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하였으며, 민감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 부과, DDA 협상 타결 후 논의(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타(TRQ) 물량 제공) 대상 품목으로 분류함.
 - 우리나라에 민감한 품목인 쌀, 사과, 배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함.
 - 계절관세는 칠레산 포도(신선)에 적용되며, 11월~4월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 MFN 관세를 유지함.
 -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은 일단은 MFN 관세를 유지하고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 철폐 계획을 논의하는 품목으로, 채소·화훼류(고추, 마늘, 양파, 참깨, 잎담배 등), 곡류(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축산물(돼지고기:냉동도체·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커드,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 과실류(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주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기타(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등) 등이 해당됨.
- 일정량의 쿼타(무관세)를 제공하되 쿼타를 넘어서는 물량은 DDA

1) 농림부(2002), “한·칠레 FTA 농산물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4〉 수입실적이 많은 품목에 대한 쿼타물량 제공 현황

품 목(톤)	TRQ제공(A)	2001 수입(C)	A/C	비고(국내생산)
쇠고기	400	166,000	0.06%	163,000
닭고기	2000	83,000	2.4%	267,000
유 장	1000	38,000	2.6%	-
기타채소(건조)	100	1,538	6.5%	653,000
계	3,500톤	288,538톤	1.1%	

협상 후 논의키로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18개로, 주요 대상 품목은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냉동,조제저장), 유장(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등임.

- 이들 품목 중 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건조) 등은 이미 상당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들로, 칠레측에 총수입물량의 1.1%인 3,300톤의 물량을 쿼타로 제공하게 됨.

- 한편, 맨더린, 자두는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쿼타 물량은 국내 생산량의 각각 0.02%와 0.5%임.

■ 79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조제분유, 기타과실(건조), 배·딸기(조제저장),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장 16년의 관세 철폐(6년 거치 후 10년 내 철폐) 기간이 허용됨.

- 5년 철폐 대상품목은 말, 양, 닭, 칠면조, 장미·난초·카네이션, 식물잎, 배추, 상추,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주스,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마가린, 당(맥아등), 코코아, 초콜릿, 면류, 빵 등 545개 품목임.

- 197개 농산물 품목이 해당되는 10년 철폐 품목은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

지,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일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 멜론, 과일주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주스 등임.

〈표 5〉 우리나라의 농산물양허안 개요

양허 카테고리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224	중유, 중돈, 중계, 비계,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 씨, 기타 씨, 종자,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
5년철폐	545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열젤리, 튜립·백합·기타 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난초·카네이션,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추,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주스,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마가린, 당(액아 등), 코코아, 초콜릿,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원두콩, 밤 등), 호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7년철폐	40	복숭아 통조림, 잼, 주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칠면조고기, 옥수수(중자), 원두·콩(냉동), 감자, 기타채소(냉동), 호두, 나무딸기, 수프 등
9년철폐	1	기타 과일주스
10년철폐	197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소 등),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일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 멜론, 과일주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주스 등
계절관세	1	포도
16년철폐	12	조제분유,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딸기(조제저장), 가공품,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등
TRQ+DDA 이후 논의	18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냉동,조제저장), 유장 (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DDA 이후 논의	373	고추, 마늘 등 채소·화훼류, 보리, 콩 등 곡류, 냉동 돼지고기, 버터, 치즈 등 축산물, 감귤, 대추 등 과실류, 수박, 녹차, 참깨 등
제 외	21	쌀, 사과, 배
총 계	1,432	

■ 칠레는 2개(5년 철폐)를 제외한 전체 수산물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함.

다. 수산물

■ 우리나라는 수산물에 대한 양허안은 즉시철폐, 5년철폐 및 10년철폐의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홍어, 정어리 등 대칠레 수입이 많거나 국내 어업에 민감한 36개 품목은 10년 철폐로 분류함.

- 대칠레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277개 수산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함.

- 한편, 대칠레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이거나, 현재 대칠레 수입실적이 적더라도 향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5년 철폐로 분류함.

〈표 6〉 우리나라의 수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 카테고리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277	고래고기, 활어(열대어, 송어, 실뱀장어, 잉어, 방어, 연어, 돔 등), 신선냉장청어, 대구,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꽃게 등), 피레트(붕장어, 가자미, 참다랑어 등), 어분류, 간장(건조, 훈제), 어란(건조, 훈제), 염장·염수장어란, 송어, 갈치, 정어리, 고등어, 조기, 게, 바지락, 소라, 성게, 해삼 등), 굴, 가리비, 오징어, 문어, 김, 파래, 한천, 통조림(청어, 정어리, 가다랭이 등), 생선소시지, 생선묵 등
5년철폐	86	활어(돔, 농어 등), 신선냉장(연어, 대구, 갈치, 아귀, 황다랭이, 가다랭이 등), 냉동(대구, 곱상어, 민대구, 은대구, 조기, 명란, 참다랭어 피레트, 닭새우류, 새우살, 왕게, 꽃게, 갑오징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 등), 통조림(고등어, 콩치, 굴, 바지락, 홍합, 골뱅이 등), 조제 해삼, 마른 톳, 조미 오징어 등
10년철폐	36	냉동(송어,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전갱이, 삼치, 복어, 새끼리민태, 홍어, 명태 피레트, 명태 연육, 굴, 문어, 가리비, 바지락 등), 통조림(정어리, 전갱이 등), 조제 골뱅이, 분·조분(비식용) 등
계	399	

라. 임산물

- 칠레는 전체 임산물을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임산물의 양허 카테고리를 즉시철폐, 5년철폐 및 10년철폐로 나누어, 원목, 단판, 칩 등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138개 품목은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함.
 - 파티클보드, 섬유판과 합판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철폐로 분류함.

〈표 7〉 우리나라의 임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 카테고리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철폐	138	원목, 단판, 칩 등
5년철폐	70	제재목, 섬유판(0.5g/cm ³ 미만), 활엽수합판(6mm 미만), 웨이퍼보드 등
10년철폐	29	파티클보드, 섬유판(0.5g/cm ³ 초과), 합판(6mm 이상) 등
계	237	

IV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내용



전문(Preamble)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특별한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함.
- WTO 다자무역 체제 및 APEC 등 기존의 다른 다자, 양자 및 지역체제의 약속을 존중함.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을 강화함.

제1장 최초조항

- 한국과 칠레 양국은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부합하는 FTA를 설립함.
- 한·칠레 FTA는 상호간 무역 확대 및 다양화, 무역장벽 제거 및 무역 원활화, 공정경쟁 조건 보장, 역내 투자기회 증진, 협정의 이행·적용 및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양국간 협력 및 다자간 협력 증진을 위한 틀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다른 국제협정과 상충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 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제2장 일반적 정의

-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를 규정함.
 - 2개 이상의 장(chapter)에서 규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정의에서 규정함.

제3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상품교역에 대하여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함.

-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감축함.
 - 협정의 자유화 대상 품목의 MFN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회원국은 FTA 관세율의 인하를 협의기로 함.
- 아래의 경우에 상품의 일시반입을 허가함.
 - 사업목적의 전문장비
 - 취재목적의 음향 및 방송장비
 - 스포츠와 전시 목적의 장비 및 상품
 - 상업적 건본품 및 광고용 필름
-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함.
-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타,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함.
- 당사국간 수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금지함.
-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이 야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FTA 관세인하 정지 혹은 최혜국관세 및 협정상 양허표의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농산물에만 적용

〈표 8〉 양자간 세이프가드와 글로벌 세이프가드 비교

	한·칠레 FTA 농산물 양자간 SG	WTO SG
적용대상	· 칠레에게만 발동 가능	· 모든 수출국에 대해 취해야 함.
적용요건	·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시장교란(market disturbance) 야기 또는 그 우려 · 피해 및 우려를 판단할 객관적 요소에 관한 규정 없음.	· 절대적, 상대적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야기 및 그 우려 · 시장점유율, 가동률, 고용 등 객관적 요소 종합 고려
조치	· 관세인하의 정지 또는 MFN 관세 또는 협정상 양허표의 기준 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인상	· 관세 인상 또는 수량 제한

〈표 8 계속〉

	한·칠레 FTA 농산물 양자간 SG	WTO SG
대상품목	· 농산물	· 전 품목
발동기간	· 제한없음.	· 최대 4년(연장가능 : 8년까지)
잠정조치	· 120일간 잠정조치 발동	· 피해 및 우려에 관한 명백한 증거 하에 200일간 잠정조치 발동
사전협의를 및 수출국의 대응조치	· 수출국 요청시 보상협약 · 30일 이내 미합의시, SG 발동 및 수출국 보복조치 가능 - 동등한 수준의 양허 정지 및 관세 인상	· 의무적인 사전협약 · 30일 이내 미합의시, SG발동 및 수출국 보복조치 * 절대적 수입 증가인 경우 3년간 보복 금지

제4장 원산지 규정

가. 한·칠레 FTA 원산지규정 개요

-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어느 정도 공정을 수행해야 협정의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원산지 규정은 양국의 산업경쟁력과 교역규모를 기초로 하여,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칠레와의 FTA에서는 NAFTA, EU-Chile FTA를 기본으로 하되, 국내 산업구조와 칠레와의 교역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작성하였음.
 - 원산지규정은 총칙(General Rule)과 품목별 판정기준(Specific Rules)으로 구성
- 총칙부분은 원산지규정의 일반원칙, 용어의 정의, 협정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 제3국산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은 엄격한 원

산지 기준을 마련함.

■ 품목별 판정기준은 제3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칠레에서 가공할 경우 칠레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품목별로 결정하는 것임 (부속서에 규정).

- 협정문은 원산지 관련 정의조항, 원산지 판정원칙, 부가가치 계산 방식, 미소가공과정, 환적조항, 미소조항, 대체가능물품 등을 규정하며, 부속서는 전체 608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함.

나. 원산지 인정요건의 일반원칙

■ 아래의 경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

(1) 양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 양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과 광물
- 양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 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양국에서 가공한 물품 등

(2) 제3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경우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됨.

- 한·칠레 FTA 원산지 규정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정은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공정기준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함.

①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을 비교하여 물품의 국제적 분류기준인 HS 코드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현행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 엄격한 2단위 변경(CC)이 많으며, 공산품의 경우 4단위(CTH)·6단위(CTSH) 변경이 주류를 이룸.

②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Criterion)

■ 부가가치기준은 특정 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임.

- 이 기준은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세번변경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단독으로 사용됨.

- 현행 규정의 부가가치 수준은 공제법(build-down method)으로는 45%, 직접법(build-up method)으로는 30%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 인정기회를 확대함.

* 이러한 부가가치 수준은 캐나다·칠레 FTA의 35% 수준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임.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대부분의 FTA에 규정된 부가가치 수준은 60%임.

- 혼합통조림과 혼합주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80% 기준을 적용함.

③ 특정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특정가공공정기준은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임.

(예) TV의 경우 브라운관(CRT) 생산국이 원산지가 됨.

- 동 기준은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세번변경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섬유분야에 주로 규정하고 있음.

다. 특수한 경우의 원산지 인정

(1) 최소허용(de minimis) 수준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역내산 원산지를 인정

(2)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and Materials)

- 구분하기 어렵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결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재고관리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라. 한·칠레 FTA의 원산지 일반기준

-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높게 규정한 반면, 공산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낮추어 규정함.

제5장 통관 절차

가. 개요

- 상품의 수출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 관련 의무 등을 규정하고, 당사국 정부의 상품 원산지 확인절차를 규정함.

나. 원산지 발급

- 한·칠레 FTA의 원산지 발급은 기본적으로 수출자 및 생산자 자율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짐.
- 단,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이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해 위임된 기관에 의해 증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다. 원산지 확인

- 원산지 확인을 위해 양국의 세관당국이 수출국에 원산지관련 정보 요구 가능. 이에 따라 각 세관당국은 수출업자 및 생산자에 서면질의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질의를 받은 후 30일 내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음.
- 세관당국은 수출국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생산관련 기록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음.
 - 수입국 세관당국은 사전에 방문의사를 통보해야 함.
 -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인방문에 대해 서면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동 방문대상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음.
- 수입국이 원산지 확인 후 원산지 증명이 허위로 또는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원산지규정 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음.

라. 기타 규정

- 통관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원산지기준 합치 여부, 임시반입 허용 등에 대해 사전 판정(advance ruling) 제도를 도입함.
- 원산지 판정에 대한 수출입자의 이의 제기 및 재심사가 가능하며,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를 1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함.
- 수출입자가 원산지증명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민사 및 행정적 책임을 부과함.

- 원산지증명서 면제금액은 1,000달러이며, 각 원산지증명서는 1회 수입에 한함.
-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및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egulation)을 제정하고 이행함.

제6장 긴급수입제한조치

- 과도기간중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
- GATT 94 제XIX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조치는 한·칠레 FTA 협정 제 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
- * 농산물에 대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제3장에서 별도로 규정

제7장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 반덤핑(Anti-Dumping)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WTO 및 GATT 1994 규정 등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조치는 한·칠레 FTA 협정 19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 조치는 「동·식물병해충」, 「식품첨가제」, 「오염물질」 등에 따른 위해로부터 사람·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
-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어떠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도 채택·유지·적용할 수 있으나, 적정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함.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위장된 수입제한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또한 당사국의 SPS 조치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안전), OIE(국제수역사무국, 동물검역),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검역) 및 양국이 공히 회원국인 여타 국제기구의 기준, 권고 및 지침에 기초토록 함.

-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관련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수출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동등성 원칙).

- 또한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국은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 절차에 대하여 수입국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SPS 조치는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되, 관련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위험평가방법을 고려해야 함.

- 위험평가지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병해충 또는 질병의 발생률, 병해충 또는 질병 무발생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박멸 또는 방제 프로그램의 유효성, 위생 및 식물위생 기관의 구조 및 조직,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통제, 감시, 진단 및 다른 절차 등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기타 요소 등임.

- 위험평가 및 SPS 조치 결정시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소로는, 병해충 또는 질병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의 생산 또는 판매 측면에

서의 잠재적 피해, 수입체약국 영토 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비용,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효율성 등임.

- 적정보호수준 설정시 무역상 부정적인 효과 최소화 목적을 고려토록 하고, 무역에 차별을 초래하거나 위장된 제한을 형성할 수 있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해야 함.
- WTO/SPS 협정 부속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개정되는 SPS 조치 정보를 상호 제공해야 하며, 주요 가축질병, 식물병해충 발생 및 사람 건강과 직결된 식품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내 통보해야 함.
 - 기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또는 병해충 발생 등의 경우에는 10일 내 통보해야 함.
- 동물 및 식물위생, 식품안전 및 무역분야 대표로 구성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원회(Committee on SPS Measures)를 설치, 2년마다 개최(협정 발효 후 30일 내 구성)함.

제9장 표준관련 조치

- 본 장은 WTO/TBT 협정에 따른 기술장벽 제거 노력을 의무화한 것으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함.
-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장이 적용되는 범위를 표준관련조치로 한정하며, 법 목적에 합치될 경우 자율적 보호기준 설정 권리를 보유함.
 - 내국민/최혜국대우를 보장하되 불필요한 기술장벽 설치를 금지함.
- 당사국들은 표준관련조치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당사국의 기술기준간에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적합성평가 절차의 적용에서 상대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명시 및 이를 위한 준수사항과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함.

-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고,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관련조치 목록을 작성하고,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 법 집행에 방해가 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를 허용함.

제10장 투자

- 설립 전 단계의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투자를 자유화하여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회사 설립 후 단계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기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함.
- 협정이 규정하는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직접 및 간접투자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투자로 확대함.
 - 단, 상업적 채권과 은행, 보험회사, 신용금고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협정 발효 4년 후 포함 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함.
- 역내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국제관습법에 따른 공평하고 형평에 입각한 대우를 부여함.
- 고위경영자 등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며, 국산품 사용의무, 기술이전의무 등 이행의무 부과도 금지됨.
- 투자보호를 위하여 시장환율에 의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되, 채권자 보호, 형법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송금제한은 가능함.
- 원칙적으로 직·간접적인 국유화 또는 수용을 금지함. 다만, 공공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시장가격에 따

라 보상하여야 함.

- 투자자는 동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직접 또는 투자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음.
 - 제소된 국가는 중재절차 참여 의무를 지며, 투자자는 투자국내 제소절차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음.
- 국제수지, 대외금융상 위기나 위협, 통화환율정책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자본이동에 대한 긴급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 칠레에 대한 투자자는 중앙은행법에 의한 일반투자절차와 DL600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투자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
 - 특별투자절차를 따른 경우, 동 협정상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공기업 민영화 조치, 자본거래 조치, 소외계층 보호 등 현행 규제(Annex I) 또는 장래유보조치(Annex II) 리스트에 명시된 일부 분야의 경우 투자협정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국적의무 부과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현행 규제의 경우, 추가 규제금지(standstill) 원칙이 적용됨.

제1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
- 상업적 주재에 따른 서비스 공급을 제외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형태를 대상으로 하되, 서비스 분야 중 금융, 항공, 정부조달, 보조금, 상업적 형태가 아닌 공공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상대 체약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NT)를 보장하고, 현지주재요건(LP)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문직 서비스 허가 및 자격

증명이 서비스 교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함.

- 서비스 공급자수 및 공급형태에 대한 현지주재요건(LP)금지와 내국민 대우(NT)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분야의 수량규제(QR)현황을 부속서에 명기함. 현행규제(Annex I)와 수량제한(Annex III)에 대해서는 추가규제금지(standstill) 원칙이 적용됨.

제2장 전기통신

- 투자 및 서비스 활동에 있어 전화 및 컴퓨터 등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공중전기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함.
 - 기업과 개인의 국내 또는 역내국간 정보전달을 위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 이용을 허용함.
 - 접근제한은 공공서비스 확보 및 공중통신망의 기술적 통일성 유지 등 최소한에 국한됨.
 - 공중통신 서비스료는 경제적 비용을 반영해야 함.
-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가 및 승인절차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속해야 함.
- 공중통신망에 연결되는 통신기기에 대한 표준조치는 공중전기통신망의 기술적 손상 방지, 사용자의 안전 및 접근 보장,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채택 또는 유지 가능함.
 - 적합성 평가 절차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속해야 함.
 - 협정 발효 1년 내 적합성 평가 관련 연구소나 시험기관의 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중통신망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토록 할 수 있으나 독점사업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계요건, 구조 분리 요건, 경쟁자에 의한 공중전기통신망 사용 등이 보장되어야 함.

제13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 투자 및 서비스 공급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활동에 종사하는 일정 범주의 기업인에 대하여 일시 입국 및 체류를 보장함.
- 적용대상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며, 상대국의 노동시장에 편입하거나 영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본 장의 적용대상인 기업인의 범주를 상용 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상사주재원으로 구분함.
 -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입국에 대하여는 공중보건과 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치에 저해되지 않는 한 협정 본문 및 관련 부속서에 의거하여 일시 입국을 보장함.
 -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해 별도의 노동허가, 사전승인절차 또는 수적제한을 가할 수 없으나, 비자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제14장 경쟁

- 비경쟁적 조치가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칠레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키로 함.
- 역내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증진하기 위한 당사국간 협력사항을 규정함.
- 경쟁정책의 이행으로 상대국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에 통보해야 함.

제15장 정부조달

-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있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며, 기타 차별적인 국산품 우선구매요건 및 대응구매(offset) 관행을 금지함.

- 정부조달제도, 공급자 자격요건, 공급자 선정결과 등에 대해 평료성을 보장하고 전자매체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방안을 공시해야 함.
- 정부조달 협정 부속서의 주요 내용
 - 양허기관
 - 우리측은 기존의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양허기관을 개방(42개 국가기관, 15개 지자체(광역자치단체에 국한하여 개방), 21개 투자기관)하며, 칠레측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칠레·EU FTA상의 양허기관(국가기관, 지방정부, 투자기관)을 개방함.
 - 양허하한선
 - 국가기관의 양허하한선을 50,000 SDR로 인하(시설공사는 500만 SDR)
 - 지자체의 경우 우리측은 WTO 정부조달협정과 동일(물품, 서비스는 20만 SDR, 시설공사는 1,500만 SDR)하며, 칠레측은 상기 “국가기관”에 광역지방정부를 포함함.
 - 기타 기관의 경우 양측 모두 우리측의 WTO 정부조달협정과 동일한 양허하한선 설정(물품 45만 SDR, 시설공사 1,500만 SDR)
 - 적용제외규정: 우리측은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근거로 현행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정부조달협정의 예외로 확보함.
 - 정부조달의 민감성을 고려해 한·칠레 FTA 전체에 적용되는 예외 외에도 치안·안보와 관련된 별도의 예외규정을 설정함.

제16장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행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의 이행을 위한 보호조치가 정당한 교역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함.

- WTO/TRIP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법을 통해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가 가능함.
- 양국간 무역 및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사회기반의 한 축을 이루는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양국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가 경제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고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함.
 -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양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등록 및/또는 보호되고 있고, WTO/TRIPS 협정 관련 조항(제2장 제3절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보호의 범위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
 -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이 당해 국가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그 상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음.
- 본 협정에 따라 한국은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에, 칠레는 피스코 등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

제17장 투명성

- 관련 법규의 집행에 있어 사전 고시, 정보 제공 등 절차의 명료성을 유지하기로 함.
- 본 협정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 및 사법적 검토 기회를 부여함.

제18장 협정의 운영

- 협정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

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와 협정이행과 관련한 행정·기술적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Secretariat)을 설치함.

- 자유무역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함.
 - 협정의 이행과 적절한 적용의 감독
 - 협정 적용 결과에 대한 평가
 - 산하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 감독
 - 기타 당사국이 회부한 사항

■ 자유무역위원회는 양국 합의 하에서 아래 사항을 수정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
- 관세 철폐 계획
- 원산지 및 통관과 관련된 통일규칙

제19장 분쟁해결

■ 한·칠레 FTA 및 WTO 협정의 공동 해당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간 협의, 자유무역위원회의 주선, 화해 및 중개, 패널 설치의 순임.

■ 패널절차는 다음과 같음.

- 당사국이 합의한 패널위원 후보 명부(임기 3년의 15인 이내로 하되, 1/3은 제3국 출신 전문가이어야 함)를 작성함.
- 패널 설치 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명부에 기재된 패널위원 후보 중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함.
- 패널은 사실 확인 및 피제소국의 협정상 의무위반 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분쟁해결 권고안을 작성함.
- 패널은 최초 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제시해 의견을 접수한 후 최종

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제출함.

- 최종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분쟁에 따른 피해상당액의 보복조치 발동이 가능함.

제20장 예외

- 본 협정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의 일반예외가 적용되며,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도 허용됨.
- 원칙적으로 본 협정은 당사국의 조세체계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며,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애로를 겪을 경우,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 직접투자를 포함한 외환거래 제한조치를 허용함.
 - 단, 이러한 조치들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야지 필요 이상의 기간이 설정되어서는 안됨.

제21장 최종 조항

- 당사국간 합의로 협정문의 수정이 가능함.
- 본 협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한을 교환하고 나서 30일 이후에 발효됨.
- 1996년 9월 체결된 양국간 투자협정(BIT)는 본 협정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함.
- 협정 발효 4년 후 금융서비스 개방문제를 재논의함.



왜 칠레인가?



V. 왜 칠레인가?

1. 칠레시장의 중요성
2. 한·칠레 교역구조
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1

칠레시장의 중요성

- 칠레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임.
 - 칠레는 총인구 1,505만명(한국의 3분의 1), GDP 규모 665억달러(한국의 5분의 1), 1인당 GDP는 4,277달러의 시장임.(2000년 기준)
-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세계부패지수 10위권),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
 - 칠레는 70년대 초 동아시아형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였으며, 1991~1997년 GDP 성장률은 남미국가로는 경이적인 수준인 8%임.
- 칠레는 최근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우리 IT산업의 진출 유망시장이며, 컴퓨터,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중남미 1위국가임.
-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중요함.
 - 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교역은 2002년 기준으로 수출이 88.6억달러, 수입이 37.4억달러로서 대중남미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51.2억달러임.

2

한·칠레 교역구조

- 우리나라는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는 보완적임.
-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칠레 교역은 수출 약 4억 5천 4백만 달러, 수입 약 7억 5천 4백만 달러로서 외형적으로 약 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우리의 수출품목이 통신기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 공산품 일색인 반면, 수입품목은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를 비롯하여 펄프·목재, 광석 등 우리 경제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짐.
- 칠레는 세계 최대의 과일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칠레와의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과실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농산물이 별로 없음.
 - 세계의 농산물 수출액 중 칠레의 비중은 0.6~0.7%선에 불과하며, GDP에서 농림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정도(우리나라의 농림업은 2000년 기준 4.2%)임.
- 우리나라와 지구 대척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위치, 반대되는 계절 등도 칠레의 대한민국 농산물(특히 과일) 수출에 기본적인 제약요인으로써 우리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희석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됨.

〈표 9〉 2002년 한·칠레 양국간 수출입

(단위: 천달러, %)

순위	대칠레 수출			대칠레 수입		
	품목	금액	비율	품목	금액	비율
1	자동차	125,716	27.7	동괴	426,460	56.6
2	경유	44,691	9.8	동광	120,596	16.0
3	휴대용전화기	31,016	6.8	펄프	69,993	9.3
4	자동차부품	20,176	4.4	철강	39,562	5.2
5	세탁기	18,784	4.1	아연광	12,841	1.7
6	고밀도에틸렌	17,010	3.7	기타 수산가공품	12,005	1.6
7	폴리에스터직물	14,999	3.3	원목	9,981	1.3
8	스테인레스 및 금강봉강	12,297	2.7	기타 어류	8,856	1.2
9	편직물	8,635	1.9	포도	8,673	1.2
10	칼라TV(19~20인치)	7,921	1.7	제재목	7,391	1.0
11	기타	152,754	33.6	기타	37,577	5.0
	총계	453,999	100.0	총계	753,935	100.0

* 한국무역협회자동차(세단형승용차, 화물자동차, 스테이션왜건, 지프형승용차)

*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 우리나라의 무역수지흑자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남미국가가 최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FTA 상대국이 늘어날수록 자연히 역외국에 대한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가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전망은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 2001년 말까지의 총 반덤핑 피소국가를 분석한 자료로도 뒷받침됨.
 - 중국이 254건, 한국이 135건, 대만과 미국이 각 93건, 인도네시아 73건 등 다수 반덤핑피소국가는 대부분 동아시아국가임.
- 칠레는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이미 10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 싱가포르, EFTA 등과 10여개의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가까운 시일내에 대부분의 주요교역국들과 FTA관계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미체결국의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임.
 - 2005년 발효를 목표로 현재 미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은 중남미지역에서의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됨.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전화: 02)2100-7628~30 FAX: 02)2100-7978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화: 02)3460-1208 FAX: 02)3460-1044

<http://www.kiep.go.kr>